하여야 한다.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때에는 깔판, 깔목 등을 받치거나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4) 레미콘 트럭(애지테이터 : agitator)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협착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5) 그 밖의 철근 가공 및 조립, 거푸집 설치, 콘크리트 타설 등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C-43-2012(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)에 따른다.

## 6.2 플랜트(Plant)의 설치

- (1) 플랜트는 지하연속벽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설치장소는 굴착공사 등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장소이어야 하며, 안정액의 공급 및 회수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 플랜트의 설치장소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장비의 침하 및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풍압 등 횡방향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앵커를 설치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플랜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장비 목록은 <표 1>과 <그림 9>와 같으며, 이들은 각각의 기능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, 이 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
<표 1> 플랜트를 구성하는 주요장비 목록

장비명	용도
디샌더(Desander)	벤토나이트 및 슬라임 분리
필터 프레스(Filter Press)	슬러지 탈수장치
믹서(Mixer)	안정액 혼합
사일로(Silo)	벤토나이트 저장
피드 펌프(Feed Pump)	벤토나이트 용액 공급

(4) 장비를 이송 및 설치할 때에는 중량물의 운반 및 고소작업이 이루어지므로